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3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5년 3월 10일
- 나. 발 의 자: 최봉희 의원 외 4명
- 다. 회부일자: 2025년 3월 20일
- 라. 상정일자: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3. 24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최봉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이용료 반환 기준을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으로 변경하여,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공공교육시설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,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아울러, 이용료 감면 관련 규정을 “감면 또는 면제”에서 “감경 또는 면제”로 조정하여 중복 표현을 제거하고 법률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(안 제9조)
- 이용료 반환 기준 변경 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현재 본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은 그 모(母)법이 「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(1961.9.18. 제정)」이

며, 개정하고자 하는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은 그 모(母)법이 「사회교육법 (1982.12.31. 제정)」으로써 평생교육법은 평생 교육 진흥이라는 헌법 정신에 의거 사회교육을 제도화하고,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제정된 법률임.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9조의 개정사항은 용어의 변경(감면→감경)으로써 “감면”은 부담을 덜어 주거나 면제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므로 이미 그 단어에 면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. 따라서 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감경 또는 면제로 수정하여 동의어 반복을 삭제하고자 함.
- 안 제10조는 프로그램 이용자가 반환 요청 시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의 준용 규정을 「학원법 시행령」 제18조제3항에서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23조로 개정하는 내용임.

○ 검토 결과

-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에서 평생교육 기회 부여를 위해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기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재정 부담 등을 수반하는 내용은 없음.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의어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용어의 변경(감면→감경)과 이용료 반환 규정의 준용 법률을 변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개정을 통해 법률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이용료 반환 기준 준용 법령 상의 반환 사유와 반환액을 비교하면 실질적 내용 측면에서는 큰 차이점은 없으나, 현재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모(母)법이 「시설강습소에관한법률(1961.9.18. 제정)」이므로 근거 법령을 「평생교육법」으로 변경하여 공공 교육 시설로서의 성격과 국민의 평생학습 및 교육받을 권리 보장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므로 일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봉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89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3. .

발 의 자: 최봉희·김지연·전승관
양송이·정선희 의원
(5인)

1. 제안이유

- 가. 이용료 반환 기준을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으로 변경하여,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공공교육시설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,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나. 아울러, 이용료 감면 관련 규정을 “감면 또는 면제”에서 “감경 또는 면제”로 조정하여 중복 표현을 제거하고 법률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(안 제9조)
- 나. 이용료 반환 기준 변경 (안 제10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: 생 략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감면**”을 “**감경**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「평생교육법 시행
령」 제23조를 준용하여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이용료의 징수) ①·② (생략)	제9조(이용료의 징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<u>감면</u> 또는 면제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감경</u>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이용료의 반환)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	제10조(이용료의 반환)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<u>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</u>	3. <u>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23조를 준용하여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</u>